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2018. 6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2018·6

고용노동부

목 차

1.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인포그래픽) ... 1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19
3.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참고자료 47
4.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101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인포그래픽]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더욱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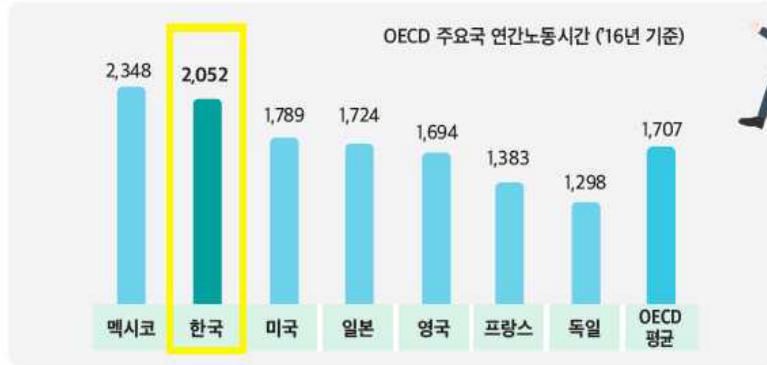
일과 삶의 균형!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시간 단축, 왜 필요할까요?

장시간 노동, 지금 우리는...

- ◆ 연간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로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 훼손, 삶의 질 저하, 기업경쟁력 악화 초래



- ◆ 현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 가능

- ◆ 26개에 이르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453만명 근무 중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업종



노동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등으로 장시간 노동 개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노동생산성 상승

- ◆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17년, 예산정책처)
-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17년, KDI)



일자리 창출 효과

- ◆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3만 7천명~17만 8천명 예상 ('17년, 노동연구원)



산업재해 감소

- ◆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3.7% 감소
- *제조업은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5.3%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300인 이상 기업, 특례제외업종은 2018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듭니다



1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

◆ 휴일·연장근로 포함, 최대 52시간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시행시기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18.7.1.

* 21개 특례제외업종 '19.7.1.

50 ~ 300인 미만 '20.1.1.

5 ~ 50인 미만 '21.7.1.



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정
(노사 서면합의 시)



인정기간

'21.7.1. ~ '22.12.31.

3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시행시기

'18.3.20.



4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 노동시간 특례업종 :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업종

◆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26개



5개

시행시기

'18.7.1.(주 최대 68시간 적용)

* 주 최대 52시간은 '19.7.1.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시행시기

'18.9.1.

특례도입 사업장은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특례유지
종 5개

① 육상운송업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특례제외
종 21개

① 보관 및 창고업 ②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 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 소매업 ⑤ 금융업 ⑥ 보험 및
연금업 ⑦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 우편업 ⑨ 전기통신업 ⑩ 교육서비스업 ⑪ 연구개발업
⑫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 광고업 ⑭ 숙박업 ⑮ 음식점 및 주점업 ⑯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 방송업 ⑱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 사회복지서비스업 ㉑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5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시행시기

300인 이상 '20.1.1.

30 ~ 300인 미만 '21.1.1.

5 ~ 30인 미만 '22.1.1.



6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 1주 노동시간 단축

40
시간



35
시간

◆ 1주 연장노동시간 축소

6
시간



5
시간

시행시기

'18.7.1.



노동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합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300인 이상 주 최대 68시간 → 52시간

특례제외업종 무제한 → 주 최대 68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 강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신규
채용

증가노동자 수 1명당
1~2년간 월 40~80만원 지원

임금
보전

사업주가 임금감소액 보전 시
기존 재직자 1인당 1~2년간
월 10~40만원 지원
(임금보전 비용의 80% 한도)



300인 이상 기업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 인상,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은 확대

- *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 추가
- * 공정위 공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은 1인당 기준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고용창출지원금 연계 지원

◆ 기업의 신규채용 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70%)과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추가로 받도록 現 제도와 연계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연계 가능한 고용창출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연봉의 1/3 수준(900만원)을 3년간 지원(2,700만원)

- ◆ 30인 미만 : 1명 고용 시~
- ◆ 30~100인 미만 : 2명 시~
- ◆ 1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3명 고용 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를
신규고용 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 월 60만원
- ◆ 대규모기업 : 월 3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기업에서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 시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월 80만원
- ◆ 중견기업 : 월 40만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1명 신규고용 시 세금감면 기간 연장
*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

- ◆ 중소·중견기업 : 3년, 연 450~1,600만원
- ◆ 대기업 : 2년, 연 300~800만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

*지원금액은 1인당 기준임



고용창출지원금 추가 지원 예시

※ 고용창출지원금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1명 고용 시 최대 **7,690만원** 지원 (3년간 합산 금액)

- 일자리 함께하기 : 3,600만원(1명 × 100만원 × 36개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890만원(900만원 × 1명 × 36개월 × 70%)
- 고용증대세제 : 2,200만원(1,100만원 × 1명 × 2년)

※ 청년고용증대세제 입법 추진 중이며, 도입 시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신중년 1명 고용 시 최대 **5,812만원** 지원 (3년간 합산 금액)

- 일자리 함께하기 : 3,600만원(1명 × 100만원 × 36개월)
- 신중년 적합직무 : 672만원(80만원 × 1명 × 12개월 × 70%)
- 고용증대세제 : 1,540만원(770만원 × 1명 × 2년)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지원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 고용 시 최대 **5,644만원** 지원 (3년간 합산 금액)

- 일자리 함께하기 : 3,600만원(1명 × 100만원 × 36개월)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 504만원(60만원 × 1명 × 12개월 × 70%)
- 고용증대세제 : 1,540만원(770만원 × 1명 × 2년)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방지

초과근로 감소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 예상 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중
(’18년 6월)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DB) 도입 사업장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위해
별도 산정기준 마련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생산성 향상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 장시간 노동 개선
컨설팅 지원 규모 확대
* '18년 200곳 → 650곳

- 노동시간 개선이 시급한
특례제외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 개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K-앱시스트) 참여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 우선 지원

-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가점부여 등 우대('19.上~)
* 최대 5천만원 지원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의 경우 최대 1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컨설팅 등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우선 지원(~'22년, 1.5만곳)

-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 등
지원('18년 59억원)

-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인력양성 확대
* 스마트공장 석·박사과정 확대
('17년 3개 대학 → '18년 4개 대학)
*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0명 포함,
약 2,200여명 양성('18년)

2 일하는 방식 개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근로조건 취약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규모 확대
* '18년 6,500곳 → 8,000곳

- 노동시간 준수 관련 교육규모 확대(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
* '18년 4,000명 → 9,000명

3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근무혁신(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
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도입('19년~)

* (예시) 세제지원, 근로감독 면제,
컨설팅 우선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4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간접노동비 지원

* 유연근무 활용 1인당
주 5~1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유연근무제 매뉴얼 제작·배포



필요한 인력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을 '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구인관련 애로사항" 해소

* 중점관리기업 : '17.12월말 기준 15,570개 기업
→ '18년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중심 선정

** 예)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채용 편의를 위해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의
집단 동행면접 지원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자에게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일자리정보 우선 제공



오프라인

장시간 노동업종 사업장 밀집지역에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확대·운영
→ 신속한 일자리 매칭 실시

2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내일배움카드 >

1234 5678 9012 1234
0920
CARD

노동자의 역량개발 강화 위해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 (예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포함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운영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확대
→ 스마트제조 등 핵심 전문인력 양성

* ~'22년까지, 약 5만명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같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노동시간 특례제외업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실태조사('18.6월~), 노사·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유연근로시간 제도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 연장,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 단축
→ 일정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시 52시간)

- 예시**
- ◆ 2주 이내 단위
(1주) 60시간 : 48시간 + 12시간
(2주) 44시간 : 32시간 + 12시간
 - ◆ 3월 이내 단위
최대 64시간 : 52시간 + 12시간
* 3개월 평균 주 평균 52시간
- * 주 52시간 법정시행일 전에는 휴일근로 최대 16시간 추가 가능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노동시간만
정하고 각일, 각주의 노동시간과 출퇴근
시각을 노동자 자율에 맡기는 제도

- ◆ 자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등과
유사하나, 일일 노동시간 조정 등을
더 유연하게 활용



재량 근로시간제

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시행령에서 규정)에 한해 노사가
서면으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

-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 ◆ 인문·자연과학 연구
- ◆ 정보시스템 설계·분석 등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시행일보다 먼저 줄이면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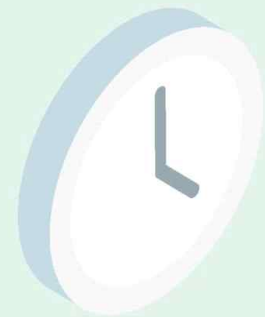
법정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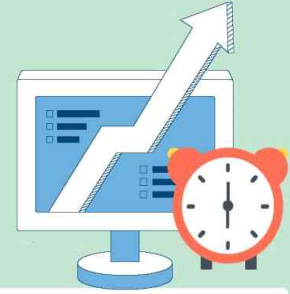
300인 이상 기업 '18.7.1.

* 21개 특례제외업종 '19.7.1

50~299인 기업 '20.1.1.

5~49인 기업 '21.7.1.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 30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을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단축 시 지원금액·기간 확대**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이 주 52시간으로 조기단축 할 경우에도 적용



*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2년, 1년까지 지원

** 법 시행일이 49인 이하 기업은 '21.7.1.이므로 '18.7.1.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금액은 1인당 기준임

2 공공조달 우대



3 정책자금 우선 지원

◆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까지 확대

* 금리·용자 한도 등 우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시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4 설비투자비 용자 우선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 사업주 설비투자비 총 금액의 2/3 이내로 최대 50억원 지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1~2%

◆ 제조업 공정혁신 등의 소요 자금을 우선 용자

* '18년 3,300억원, 시설자금 7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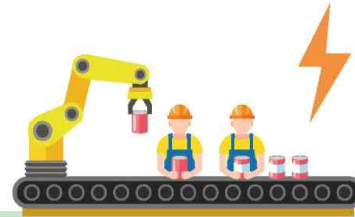


5 산재보험료 할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기업에서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

법정시행일까지 산재보험료를 10% 경감

* 현행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인정 10% 할인



6 외국인 노동자 배정 우대



7 포상 우대

각종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참고

주요 업종별 지원

① 노선버스업

- ◆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지도
- ◆ 운수종사자 양성·공급방안 마련
- 운전자 양성사업, 군 운전경력자 활용, 채용설명회 등
- ◆ 노·사·정 논의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 마련('19년)



② 건설업

- 공공공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비용 발생 시 계약기간 조정 등 지침 마련
-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해외공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신규 수주현장에 채용장려금 등 지원프로그램 활용 안내



③ 사회복지서비스업

- ◆ 시설유형별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 ◆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돌봄인력의 휴게시간 준수방안 추진
- ◆ 보육교사 업무 대체를 위한 인력 충원방안 검토



④ ICT서비스·SW업

- ◆ 적정기간 산정 등 발주문화 개선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18.4.26~ 입법예고)
- ◆ 300인 이상 대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유도, 300인 미만 기업은 맞춤형 컨설팅 제공



⑤ 콘텐츠·방송산업

- 콘텐츠**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 적용 가이드라인, 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 방송업**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시 노동시간 준수 등 포함



⑥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 ◆ 인건비 산정기준 현실화, 기술등급별 배치기준 세분화로 적정 기술인력 증원 유도
- ◆ 지자체·처리대행업체간 위탁계약 관리·감독*
* 교대인력 증원 지도, 휴일근로수당 가산적용 등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별 문의처 현황

추진과제	소관부처	담당부서	대표전화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고객상담센터 1350 *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객상담센터 1350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청(지청)으로 문의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발전재단 (www.nosa.or.kr) 02-6021-1167, 1187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지원	중기부 (이노비즈협회)	기술혁신정책과 (전략사업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정책과 (신학연기술평가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중기부 (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정책과 (보급확산팀) (스마트기업지원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 등 지원 / 전문기술인력 양성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1577-0900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고객상담센터 1350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객상담센터 1350 *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 /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객상담센터 1350 *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고객상담센터 1350 *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고객상담센터 1350 *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중기부	인재활용촉진과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노동시간 특례업종 특화 관리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안내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고객상담센터 1350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청(지청)으로 문의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공공조달 우대	기재부 (조달청)	계약제도과 (구매총괄과)	044-215-2114
	행안부	회계제도과	02-2100-3399
	중기부	판로정책과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국책은행 자금지원	금융위	산업금융과	02-2100-2500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설비투자비 용자지원	중기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과 (기업금융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 투자비 용자지원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고객상담센터 1350 *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산재보험료 할인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력 배정 우대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고객상담센터 1350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청(지청) 지역협력과(팀)로 문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우대	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고객상담센터 1350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우대	여가부	가족문화과	02-2100-6000 *www.ffsb.kr(가족친화인증신청 홈페이지)

* 종합적인 지원대책 관련 내용은 관할 청(지청) 종합점검추진단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2018. 5. 17.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 추진 배경	23
II . 기본 방향	24
III . 세부 추진방안	25
1.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25
2.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27
3.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28
4.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30
5. 특례제의 업종 등 특화 지원·관리	32
IV . 추진계획	39
V . 세부 추진일정	41
[붙임1]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43
[붙임2]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및 해외 사례	44

I . 추진 배경

-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16년)에 달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 장시간노동 관행 만연
 - * 멕시코 2,348시간, 獨 1,298, 日 1,724, 美 1,789, OECD 평균 1,707
-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훼손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
-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
 - 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68→52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금년 2월 국회를 통과, 3.20일 공포
- 노동시간 단축입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 특히 중소기업에서 인건비 부담 및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 ➔ 이에 노·사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노동자 부담 증가...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노동자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 ” (18.3월, 대통령 말씀)

II. 기본 방향

- ①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
- ②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
- ③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 특화 지원

추진 방안	주요 세부내용
신규채용 · 임금보전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확대 · 개편 ·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 정책자금 ·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 산재보험료 할인 · 외국인력 배정 및 포상 우대
생산성 향상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지원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 양성 확대 ·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 ·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 · 주요 업종별 지원

Ⅲ. 세부 추진방안

1.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 추진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강화

【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개요 】

- (신규채용 지원) 증가노동자 수 1명당 1~2년간 월 40~80만원 지원
- (임금보전 지원) 사업주가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경우, 기존 재직자 1인당 1~2년간 월 10~40만원 지원 (임금보전 비용의 80% 한도)

- (300인 미만 기업)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확대

*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이 주52시간으로 조기단축할 경우에도 적용

< 지원내용 >

- ▲ 신규채용 1인당: (현행) 월 40~80만원, 1~2년 → (개선) 월 60~100만원, 1~3년
- ▲ 임금보전 1인당: (현행) 월 10~40만원, 1~2년 → (개선) 월 10~40만원, 1~3년

- (300인 이상 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은 확대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 추가)

* 상호출자 제한 기업,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등의 대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 ▲ 신규채용 1인당: (현행) 월 40만원 → (개선) 월 60만원
- ▲ 임금보전 1인당: (현행) 500인 이하 제조업 → (개선) 500인 이하 제조업+특례제외업종

- 기업의 신규채용 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다른 고용창출 지원금도 추가(70%)로 받을 수 있도록 現 제도 연계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연계 가능한 고용창출지원금 등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원)을 3년간 지원
 - ▲ (규모) 3년간 2,700만원(1인당 900만원)
 - ▲ (최저 고용요건) 30인 미만은 1명 고용부터 지원, 30~100인 미만은 2명 고용부터 지원, 100인 이상 중소기업은 3명 고용부터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최대 1년간)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최대 1년간)
-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세금감면,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
 - * (중소·중견) 3년, 1인당 연 450~1,600만원, (대기업) 2년, 1인당 연 300~800만원

□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 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18.6월)
 - ※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노동자가 정산금을 사용하기보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에 적립·운영토록 함으로써 중간정산으로 인해 노후소득재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토록 적극 지도

2.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 선제적인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유도

□ 공공조달 우대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추진 ('18.下~)

□ 정책자금 지원

-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 대상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까지 확대하고, 금리·용자 한도 등을 우대 ('19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18.下~)

□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 조기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 사업주 설비투자비 총 금액의 2/3 이내로 최대 50억원 지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1~2%

-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기단축 기업에 우선 용자

* '18년 3,300억 원, 시설자금 7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한도

□ 산재보험료 할인

-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을 조기단축할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료율 10% 경감 ('18.下~)

* (현행)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인정 10% 할인

□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 부여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규 배정 시 가점 부여 ('18.下~)

□ 포상 우대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19년~)

*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대해 인증패 수여, 금융·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행·재정적 지원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확인 및 부처 간 공유 】

- 노동부(지방관서)에서 조기단축 확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조기단축 사업장 확인서'를 발급
- 노동부에서 확인서 발급 기업 명단을 관계부처 간 공유, 사업주는 확인증을 제출하여 조기단축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 수혜

3.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 ◆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일터혁신 컨설팅 등 제공 및 근무형태 개선 지원

1 생산성 향상 지원

□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 장시간 노동 개선 컨설팅 지원 규모 확대 ('18년 200 → 650개소, 추경)
- 노동시간 개선이 시급한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지방관서와 연계하여 컨설팅 필요 사업장 적극 발굴

* 노·사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모델 개발 중(~'18.6)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K-앱시스트)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 우선 지원 ('18.下~)
 - * 디지털 기술(VR, AR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내부인력에 전수할 수 있도록 현장진단을 통한 기술체계화(매뉴얼화) 지원
-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가점 부여 ('19.上~)
 - * 최대 5천만원 지원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의 경우 최대 1억원)

□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우선 지원(중기부, ~'22년 1만5천개소) 및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 등 지원(산업부, '18년 59억)
-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인력양성 확대 등 업계 수요에 맞는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 확대
 - * 스마트공장 석·박사과정 확대 ('17년 3개 → '18년 4개 대학)
 - *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0명 포함, 약 2,200여명 양성 ('18년)

2 일하는 방식 개선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촉진을 위하여 인사노무 전문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규모 확대 ('18년 6,500 → 8,000개소, 추정)
- 신설·소규모 등 취약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노동시간 준수 관련 인식 제고 및 자율개선을 위한 교육규모 확대 ('18년 4,000 → 9,000명, 추정)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 자발적으로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 추진 ('19년~)

< 인센티브제 단계별 세부구성(안) >

단 계	세부내용
계획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계획」 수립 * 교대제 개편, 연차휴가 활성화, 유연근무 도입·활용 등 ▪ 근무혁신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계획 이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에 따라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 실행 정도, 성과 등을 평가하여 S, A, B 등 그룹으로 구분
인센티브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지원, 근로감독 면제, 컨설팅 우선지원 등 그룹별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설계하여 기업이 상위 그룹을 획득할 유인 확보 ▪ 근무혁신 마크를 부여하여 구인·구직 취업 포털, 제품·서비스에 활용, S등급의 기업은 근무혁신 30대 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례 확산

□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 일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유연근무 매뉴얼 제작·배포 및 우수 사례집 발간

※ 유연근무 활용 1인당 주 5~1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지속 시행

4.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직업훈련 확대 및 일자리 매칭 강화 등을 통해 필요 인력 적시 지원

1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 양성 확대

□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 역량 개발강화 유도를 위해 노동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 (현행) 우선지원 대상기업·비정규직·대규모기업 45세 이상 노동자 등 → (개선)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포함

□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운영 추진

□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확대를 통해 스마트제조 등 핵심 전문인력 양성 (~'22년 약 5만명)

2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

-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을 “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 지속 관리함으로써 구인관련 애로사항** 신속 해소

* '17.12월말 기준 15,570개 기업 → '18년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선정

** 예)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채용 편의를 위해 고용센터가 구직자들의 집단 동행면접 지원

-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등 수행과정에서 구인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고용센터와 함께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

- (온라인)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은 워크넷 상에 일자리정보 우선 노출 (구인·구직 검색 우선순위에 반영)

- (오프라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를 확대 · 운영하여,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 지원

- 순회출장센터별로 이동수단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신속한 일자리 매칭 실시 (이동수단 임차규모 확대 추진)

* 동행면접, 구인발굴을 위한 현장방문(주2회) 등에 활용

5.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관리

◆ 특례제외업종 등 노동시간 단축 과정 상 애로가 예상되는 업종들의 노동시간 관련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특화 지원방안 적극 강구

1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

□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 등이 법 취지에 맞게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 매뉴얼(도입 절차, 활용 사례 등) 제작·배포 ('18.6월 2만부)
- 지역·업종별 노·사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홍보·안내 실시
* 제도 활용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3.4%, 재량근로제 4.1% ('17년, 10인 이상)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18.6월~)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추진
* 개정법 부칙에는 '22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규정

2 주요 업종별 지원

◆ 특례제외 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21.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

* 주요 특례제외 업종 50인 미만 사업체수 비율('16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사회복지서비스업(97.7%), 연구개발업(90.8%), 방송업(84.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95.5%), 하·폐수처리업(97.4%)

- 남은 3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컨설팅을 통한 일터 혁신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

(1) 노선버스업

□ 현황 및 필요성

-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道 地域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
- 금년 7월부터는 주 최대 68시간제가 적용되나, 시민 안전을 위해 면허·교육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인력충원이 곤란
 -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내년 7월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므로 향후 격일제·복격일제* 등 장시간 근로형태를 1일 2교대제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

* 격일제: 1일 근무 후 1일 휴무, 복격일제: 2~4일 근무 후 1~2일 휴무

□ 지원대책

- 금년 7월까지 현재의 운송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연 근로시간제를 활용토록 지도하고, 운수종사자 양성·공급방안* 등 추진
 - * 운전자 양성사업, 군 운전경력자 활용, 채용설명회 및 취업포털 운영 등
 - 아울러 노·사·정 집중교섭을 통해 5월 중으로 제도 연착륙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을 마련, 현장 혼란 최소화
 - ▲ 노동자: 현 운송수준 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노동시간 운영에 적극 협조
 - ▲ 사용자: 현 운송수준 유지와 노동자 임금감소 보전 및 신규채용 노력
 - ▲ 정 부: 노·사의 연착륙 노력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
- 향후 임금·노동시간 적정화, 인력 충원 등 노동자의 건강과 시민 안전이 확보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사·정 논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19년)

(2) 건설업

□ 현황 및 필요성

- 건설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2시간으로 평균적으로는 52시간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 (국내공사) 주52시간 노동에 맞춘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문제 대두
 - * 공공기관의 예산배정 관행과 옥외작업의 특성 상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을 집중하는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
- (해외공사) 업체는 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법 적용 필요성 주장
 - * 중동 등의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업체는 인력 추가파견 비용 증가 등을 우려

□ 지원 대책

- (국내공사) 공공공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발생 현장에 대해 계약기간 조정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기재부, '18.6월)
 - 민간공사는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국토부, '18.6월)
 - ※ 중장기적으로 표준공기기준 마련 및 설계·감리 등 적정대가 검토
- (해외공사) 기 수주현장에는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토록 유도
 - 신규 수주현장에는 정부의 채용장려금 등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토록 적극 안내하여 추가 인력의 채용 및 파견을 유도
 -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시 해외건설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

(3) 사회복지서비스업

□ 현황 및 필요성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금년 7.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거주시설 종사자 증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휴게시간 부여 등에 애로 예상

□ 지원대책

- (거주시설) 교대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의 단계적 충원, 개별 사회복지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설유형별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18.下)

* 교대근무 조별 표준근무표, 시간대별(최대서비스 제공시간, 야간 등) 근무인력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고위험 최종증 장애인* 돌봄인력의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추진

* 활동지원사 부재 시 생명·상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800명) ~ 독거 및 취약가구 최종증 장애인(4,000명)

** 교대근무 독려,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목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의 예외적 허용,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지자체 협조) 등

- 휴게시간 준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칙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노력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이용 시 주의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서, 상호협력 동의서(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개정 등

- (보육교사) 특정시간대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등 사업지침 우선 변경*, 보육교사 업무 대체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검토

* 예시) ① 낮잠시간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② 보조교사 업무범위 확대, ③ 맞춤반 하원 이후 혼합반 편성기준 완화, ④ 특별활동시간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등

- 보육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서류 간소화 등 평가인증 부담 완화도 검토

(4) ICT서비스 · SW업

* 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현황 및 필요성

- 대체로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성수기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 촉박한 용역기간,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과 소프트웨어 개발 · 업그레이드 시 업무량 집중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요구

□ 지원대책

- 적정기간 산정, 요구사항 상세화, 과업변경 최소화 등 발주문화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추진 ('18.4.26~ 입법예고)
- 300인 이상 대기업은 업계와의 소통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유도
 - 300인 미만 기업은 주 52시간 단계적 적용 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총 25,740개사 중 300인 이상은 113개사('16년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 / 통계청, '17.12월)

(5) 콘텐츠 · 방송산업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광고업, 게임업 등

□ 현황 및 필요성

- 부족한 제작비를 장시간 근로로 해결하는 등의 제작관행과 작품출시 직전, 마감 준수를 위한 집중 근무 등으로 52시간 초과근무 사례 발생
 - 중소규모 기업이 많아 적용 준비기간상 여유는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신규 인력채용 시 인건비 부담, 제작비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 · 구인난 우려

* 5인 이상 콘텐츠 업체 15,606개사 중 50인 미만은 14,130개사로 90.5%

□ 지원대책

- (콘텐츠) 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18.7월~),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18.下) 및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활용('19년)
 - 제도변경 사항 홍보 및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 등을 위한 민관합동 일자리 체질개선 TF 개최 등 현장소통 강화 ('18.5월)
 - 콘텐츠 분야 일자리 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18.下)
 - * 일터혁신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강화, 상담채널 마련, 민관합동 일자리 체질개선 캠페인 등
- (방송업) 외주제작 관련 인권선언문 제정 등 방송업계의 노동시간 단축 자율준수 노력 지원
 - 방송사·외주제작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방송업계 독립 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시 노동시간 준수 등의 내용 포함 ('18.下~)
 - 방송제작 특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대응 간담회·설명회 등 방송업계 소통 강화 ('18.上)
 - 방송업계 노동시간 단축 우수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영세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부담 경감 검토 ('19년)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 현황 및 필요성

- 일부 주·야 교대제 24시간 가동시설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시 시설별 교대조 근무인력(현장직·운송직 등) 0.5~1명 증원 필요
 - ※ 전체 하수처리시설(3,969개소) 중 77%(3,070개소),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198개소) 중 95%(188개소)가 지자체-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 → 노동시간 단축 대상 (5인이상) 사업장은 각각 386개소(6,695명), 63개소(863명)

- (하수처리시설) 지자체 대행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경력직 고급 기술자를 저임금 초급기술자로 대체할 우려
-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시설 운영비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이용기업체 시설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 필요
- (폐수처리·대행업) 초과근로수당 감소로 노동자 급여삭감 우려 및 폐수운반 차량 증차비용 발생 예상

□ 지원대책

- 인건비 산정기준* 현실화 및 기술등급별 배치기준 세분화로 적정 기술인력 증원 유도
 -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개정 ('18년 말)
- 지자체와 처리대행업체간 위탁계약 관리·감독* 및 영세업체 대상 범정부 지원대책 우선적용 등 추진 ('18.下~)
 - * 교대인력 증원 지도, 휴일근로수당 가산적용, 운영비 및 시설사용료 적정 재산정 등

IV. 추진 계획

- ◆ 금년 7.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주요 업종별로 관련부처가 집중 지원·관리 추진
- ◆ 개정법 및 지원대책의 현장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물론, 주요 업종별,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보완·관리

①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

- 지원대책의 내실있는 집행과 현장의 밀착 지원·관리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운영 (‘18.4월~)
 - * 근로감독관,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팀,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
-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지도·점검, 행·재정적 지원, 간담회·설명회 개최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 추진
 - * 금년 7월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에 개정법과 지원대책을 안내하고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며, 컨설팅, 인력매칭 등 필요한 지원도 연계·실시

② 주요 업종별 지원단 운영

- 특례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별로 소관 부처에서 지원단 구성*·운영 (노동부 협조)
 - * 업종별 협회, 종사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현재 노선버스, 방송콘텐츠 업종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
- 현장 모니터링 및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 강구 (‘18.4월~)

③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노동부·기재부(차관) 공동 주관 관계부처 TF를 활용, 현장 안착 시 까지 현장상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수요 발굴* 등을 지속 추진
 - * 업종·직종별 특수성, 특례제외 업종 등에 대한 특성도 고려

4 사회적 인식 제고

- 각 부처가 소관 업종별로 간담회 등을 개최, 개정법·지원대책의 주요 내용과 현행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안내·홍보 (노동부 협조)
 - * 장·차관 사업장 방문, 지역별 노사 간담회·설명회 개최, 모범사례 발굴·홍보 등 실시
- 종합점검추진단을 통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홍보, 장·차관 해당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KTV 등 TV매체, '청년기자단'(노동부 운영) 정책기사 등을 활용하여 우수 사업장 홍보
- TV 공익광고 송출(5.1.~, KBS1·MBC·JTBC) 및 대담·퀴즈프로 진행, KTX·전광판 홍보(5.1.~) 및 온라인 홍보* 강화
 - * 인포그래픽, 카드뉴스(청년, 여성, 중장년들의 삶의 변화를 스토리로 구성·홍보), 모바일 퀴즈 이벤트, 홍보영상 송출 등
- '일·생활 균형 실천선언식*' 등을 통해 '정시퇴근' 등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 * 고용노동부, 노사단체, 주요 기업 등 참여하여 일·생활 균형 실천선언(5.24.)
→ (핵심 메시지) ▲정시 퇴근 ▲휴가 활성화 ▲근무제 유연성 확보 등

V. 세부 추진일정

추진과제	소관부처	일정
1.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노동부	'18.下~
•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노동부	'18.6월~
2.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 공공조달 우대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18.下~
• 국책은행 자금지원	금융위	'19.上~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중기부	'18.下~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지원	노동부	'18.下~
• 설비투자비 용자지원	중기부	'18.下~
• 산재보험료 할인	노동부	'18.下~
• 외국인력 배정 우대	노동부	'18.下~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우대	노동부	'18.下~
•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우대	여가부	'19.上~
3.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노동부	'18.下~

•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지원	중기부	'18.下~
•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지원	중기부	'19.上~
•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중기부	'19.上~
•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 등 지원	산업부	~'20.
• 전문기술인력 양성	산업부	'18.~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노동부	'18.下~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노동부	'19.上~
•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노동부	'18.下~
4.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노동부	'19.上~
•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노동부	'19.上~
•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중기부	~'22.
•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	노동부	'18.下~
•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	노동부	'18.下~
5. 노동시간 특례업종 특화 관리		
•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안내	노동부	'18.6월~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노동부	'18.6월~

- 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기업규모별에 따라 단계적 감축
 -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②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서면합의 시 특별연장근로(8시간) 한시적 인정 ('21.7.1~'22.12.31)
- ③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공포 즉시 시행)
 -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④ 특례업종(26→5개) 대폭 축소('18.7.1 시행), 존치 5개 업종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18.9.1 시행)

특례존치(5개)	특례제외(21개)
①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 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⑯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방송업,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사회복지서비스업, ㉑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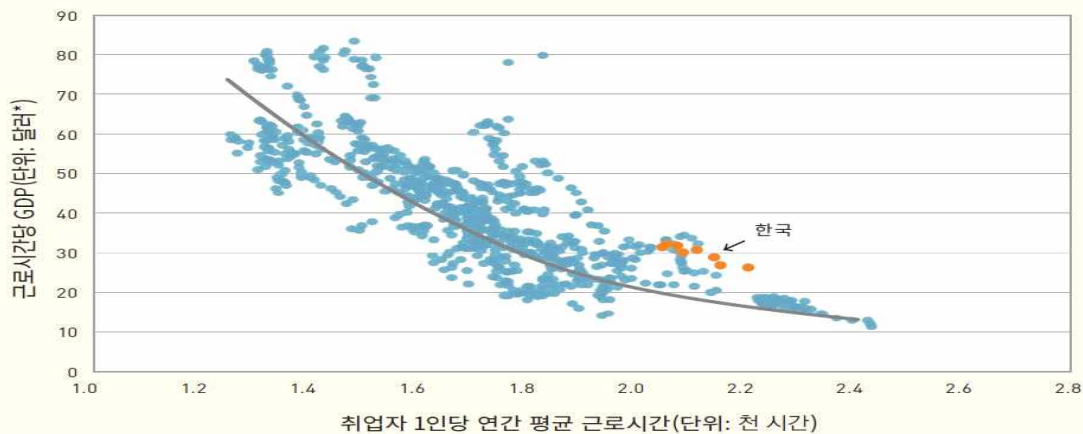
- ⑤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 ⑥ 연소자의 1주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노동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 (시행: '18.7.1)
- ⑦ 부대의견 및 부칙: 5개 특례존치업종, 공휴일의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지원방안 마련

1.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 노동생산성 영향

- (해외) '90~'16년 기간 중 35개 OECD 회원국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노동시간 당 부가가치 산출(GDP) 간 음(-)의 상관관계 존재 ('17년, KDI)

그림 1. OECD 회원국의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1990~2016년)



주: *2010 purchasing-power parity.
 자료: The Economist(2014. 12. 9)의 보도내용을 OECD 통계DB를 이용하여 일부 수정.

- (국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17년, KDI)하였으며,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전망 ('17년, 예산정책처)

□ 일자리 창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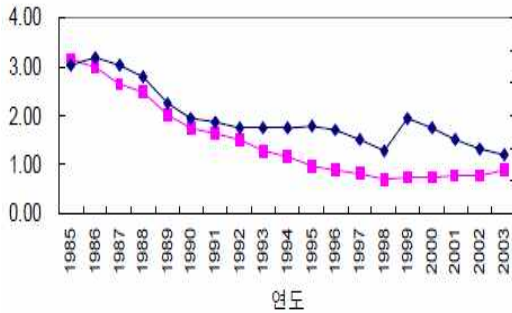
-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은 최대 137천명~178천명 예상 ('17년, 노동연구원)

구 분	해당노동자 (천명)	평균노동시간 (시간/주)	주52시간 도입시 신규채용(천명)	
			52시간 노동자	40시간 노동자
전체	1,033	58.9	136.7	177.8
5~49인	532	58.8	69.4	90.3
50~299인	350	59.3	49.0	63.8
300인 이상	151	58.4	18.6	24.2

□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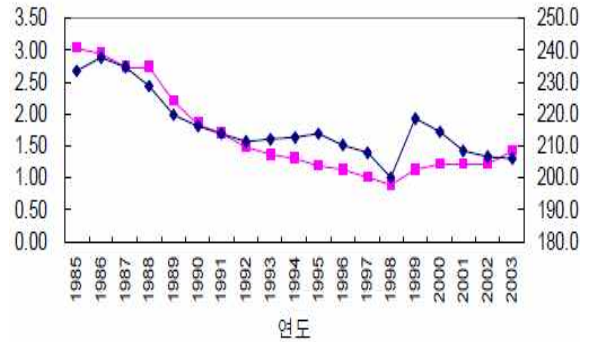
-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은 3.7% 감소, 제조업은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5.3% 감소 ('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노동시간과 재해율 변화(전산업)>



—■— 전체재해율 —◆— 전체근로시간

< 노동시간과 재해율 변화(제조업)>



—■— 제조재해율 —◆— 제조근로시간

- * 노동시간 조사 대상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98년)에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99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 증가


2. 해외 사례

- 독일, 프랑스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증가 ('08년 한국노동연구원), 이탈리아는 실업률이 감소하는 경향 ('01년 IMF)

대상국가	내용	출처
독일 철강산업('84) : 주 40→38.5 시간	· 1984~89 기간은 <u>임시근로자의 고용을 0.3~0.7% 증가시켰고, 상용근로자 고용은 0.2~0.3% 증가</u>	Hunt (1996, 1999)
프랑스('82) : 주 40→39	· <u>14,000~28,000개의 순고용 창출</u>	Marchand et al. (1983)
프랑스('96~'00) : 주 39→35	· 1996~2000 기간의 총 1,375,000개의 고용 창출 중에서 <u>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수는 240,000개로 분석</u>	Commissariat General(2001)
이탈리아('97~'98) : 주 48→40	· 노동시간 단축 이전('94~'97) 실업률은 <u>11.93</u> 이었으나, 노동시간 단축 이후 ('98~'01) 실업률은 <u>10.60</u>	IMF(2001)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참고자료**



2018. 5.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강화	51
2. 現 지원제도와 연계	55
3. 퇴직급여제도 개선	60
4.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 시 우대	62
5. 국책은행 자금지원 우대	64
6.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65
7.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용자 지원	66
8.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68
9. 산재보험료 할인	69
10. 신규 외국인력 배정 우대	72
1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시 가점	74

12.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	76
13. 일터혁신 지원	77
14.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79
15.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81
16.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85
17.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87
18.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88
19.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91
20.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93
21.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95
22. 일자리매칭 강화	96
23.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98

※ 제목 옆 페이지 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기준

① 지원강화 방안: 총괄

구분	<500인 초과>		< 300인 이상-500인>		<300인 미만>			
법정사단 정토간축	신규채용	60만원 1년	신규채용	제조	비제조	신규채용	제조	비제조
			신규채용	80만원, 2년	60만원,1년	신규채용	80만원, 2년	80만원, 1년
	임금보전	-	신규채용	제조 및 특례제외	비제조	신규채용	제조 및 특례제외	비제조
			신규채용	40만원, 2년	40만원,1년	신규채용	40만원, 2년	40만원, 1년
조기 단축	신규채용	-	특례제외업종		신규채용	제조 및 특례제외	비제조	
			60만원, 법정시행일까지		신규채용	100만원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법정시행일까지)	
	임금보전	-	특례제외업종		신규채용	제조 및 특례제외	비제조	
			40만원, 법정시행일까지(2년)		신규채용	40만원 (법정시행일까지)	40만원 (법정시행일까지)	

○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

<신규채용>

- 300인 미만 기업: : 現 월 80만원, 1~2년 → 改 법정시행일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는 월 80만원 지원

* 법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2년, 1년까지 지원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現 월 40만원, 1년 → 改 법정시행일까지 월 6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는 월 40만원 지원(총 2년)

<임금보전>

: 現 월 40만원, 1~2년 → 改 법정시행일*까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

* 법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2년, 1년까지 지원

○ 300인 이상 기업

* 공정위 공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규채용: 現 월 40만원, 1년 → 改 월 60만원, 1년

- 임금보전 : 現 500인 이하 제조업종만 2년 지원 → 改 500인 이하 제조업종이외에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도 2년 지원

②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

※ 노선버스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에 따라 지원

		법정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조기단축*
500인 이상	신규채용	60만원, 1년	60만원, 법정시행일
	임금보전	40만원, 1년	40만원, 법정시행일
300~499인	신규채용	60만원, 1년	60만원, 법정시행일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
300인 미만	신규채용	80만원, 1년	100만원, 법정시행일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

* 조기단축의 경우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2년 지원

○ 500인 이상 기업 임금보전

: 現 지원 불가 → 改 임금보전 실시(월 최대 40만원, 1년)

○ 임금보전 지원 범위 확대

: 現 신규채용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 → 改 신규채용 1인당 기존 재직자 20명까지 임금보전 실시

□ 향후 계획

○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에 관한 고시 개정('18.6월)

○ 지방관서 담당자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배포('18.6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

참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사업(현행)

1.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①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다만,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	---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	--

일자리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

②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버림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않음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 제 조 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1년	240만원	960만원
	중견 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대규모 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제 조 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2년	240만원	1,920만원
	중견 기업	2년	120만원	960만원
	대규모 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없음

○ 지급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0만원 이상(사업주가 최소 2.5만원 부담)일 경우만 지원

(ex. 사업주가 12.5만원을 더 준 경우, 정부지원금 10만원, 사업주 부담 2.5만원)

○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 지급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 청년·중장년·여성 등 대상별 지원과 연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소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원)을 3년간 지원
 - ▲ (규모) 3년간 2,700만원(1인당 900만원)
 - ▲ (최저 고용요건) 30인 미만은 1명 고용부터 지원, 30~100인 미만은 2명 고용부터 지원, 100인 이상 중소기업은 3명 고용부터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2년간 근속·납입(2년, 300만원)을 전제로 정부(900만원)·기업(400만원)이 지원
 - * 청년 300 + 중소기업 400 + 정부 900 = 2년 1,600만원
 - 2년형 제도와 별도로,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이 3년 근속 시 3천만원 형성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 신설
 - * 청년 600 + 중소기업 600 + 정부 1,800 = 3년 3,000만원
- (신중년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現 55개)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소기업 월 40만원 (최대 1년간)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최대 1년간)
- 일자리 함께하기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 타 장려금과 추가 지원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컨설팅 실시

※ 일자리 함께하기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0% 지원

예) 49인 기업에서 '18.7.1일 기준 2명의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총 10,980만원 지원

① 일자리 함께하기: 7,200만원(2명×100만원×36개월)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780만원(900만원×2명×3년×70%)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과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중년고용장려금)
------	---

참고 1**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현행) 성장유망업종(499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추경이후)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사행업·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다만, 성장유망업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및 사업장 근로자수 증가

□ 지원 내용

- (현행) 청년 3명 고용 시 年 2,000만원을 한도로 3년간 지원
 - * 4인 고용 시부터는 인원비례 지급(4인: 1.33명분, 5인: 1.66명분)
- ⇒ (추경이후) 청년 1명고용 시부터 年 900만원을 한도로 3년간 지원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99인	x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 이상	x	x	2,700만원	3,600만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절차) 청년 신규채용(사업주) → 첫달 임금지급(사업주) → 장려금 신청(사업주) → 장려금 지급(고용센터) * 매월 단위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온 라 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참고 2

청년내일채움공제

- (개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17년 참여경로 다양화 및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본격 실시
 - '18년은 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통해 사업 활성화 도모
 - * 지원목표: ('16) 1만명 → ('17) 신규 5.5만명(추경 0.5만 포함) → ('18) 신규 5만명
-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 '17년에는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취성패·일학습병행훈련·고용센터알선 등) 사전 참여를 통한 정규직 취업이 전제 조건이었으나, '18년부터는 참여경로 폐지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방식) 2년 간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 ②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지원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 ③ (기업→청년) **채용유지지원금 2년 7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순지원금 300만원)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참고 3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 사업목적

- 근무체제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④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⑦ 전일제 근로자 채용 시, 전일제 전환 기회 우선 부여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구분	1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중소·중견 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기업	3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실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일할 계산하지 않음)

참고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사업개요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17.8.8) 후속조치

□ 사업내용

- 사업규모: 2,000명 규모(86억)
-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신중년 적합직무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기준	내 용
구 분	① (경력 활용) 신중년의 경력 및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 ② (신직업 도전) 정보통신발달·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는 직무 ③ (역량 강화) 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직무 중 직업훈련 등을 통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용이한 직무

○ 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 단,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원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최대 1년간 3개월 단위 지급)
- 지원절차: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를 거쳐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제도 개요

- (퇴직금 중간정산)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불허하나 예외적 사유*에만 허용

* ①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또는 보증금 부담, ② 근로자의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 ③ 근로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④ 임금피크제 도입, ⑤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⑥ 천재지변 등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사용자의 책무)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도입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의 실시,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그 사실 통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근로자대표와 협의 책무 부여

□ 개선 방안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

- (사용자의 책무 부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 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함

□ 향후 계획

- 6월 초 공포 및 시행 예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18.4.11~5.21) 중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1년이상 + 주 15시간이상)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퇴직금제도

- (개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퇴직 후에 지급하는 제도
 -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 (연혁) '61년,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보장 등을 위해 법정제도로 퇴직금제도 도입(30인 이상)
 - * 적용범위 확대: '61년(30인 이상) → '75년(16인 이상) → '87년(10인 이상) → '89년(5인 이상) → '10. 12월(전 사업장)

□ 퇴직연금제도

- '05.12월,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을 위해 퇴직금제도의 대체제도로 도입
 - 개별 사업장별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를 결정(퇴직금제도 유지 가능, 임의제도)
- 퇴직연금제도 종류: 두 가지 형태 중 사업장별 선택 가능(병행도 가능)
 - ①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퇴직금과 동일수준),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 *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 부담수준이 달라짐
 - ②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 →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입금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 *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 급여수준이 달라짐

① 공공부문 조달 계약

□ (개선) 적격심사*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부여

*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가격, 이행능력, 신인도의 합산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입찰 시 고용부에서 발급하는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

□ (향후 계획)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가점기준* 마련·시행(하반기)

*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개정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

② 자치단체 조달 계약

□ (개선)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 대하여 평가 시 차등 가산점 부여(+1.0 내외)

- 자치단체 발주, 시설공사·물품적격심사 기준에 반영

현행	개선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으로 승인한 자 +1.0 ·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으로 승인한 자 +0.5 ·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으로 승인한 자 +0.3

□ (향후 계획) 개정안 마련 및 예규 개정(하반기)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

③ 중소기업 조달 계약

□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능력 심사항목은 입찰가격,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및 신인도 평가로 구성

- 특히, 신인도 평가를 통해 기술보유기업, 영세기업 등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관련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

○ 현재 특허 등 기술보유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에 가점부여* 중

* 예) 특허 인증보유(1점), 소기업·소상공인(0.75점, 1점), 신규인력채용(2~3점) 등

□ (개선)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에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 정부의 노동시간단축 일정보다 1년 이상 앞당긴 기업에 가점(3점 만점 중 2점)부여

* 예) ‘20.1.1 시행예정인 50~299인 기업이 ’19.1.1 이전에 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 가점 부여

< 심사기준 개선(안)>

현 행	개선
신규채용 우수기업 (3개월 평균 5%, 6명/ 2.5%, 3명) : 3점/2점	현행 + <u>노동시간</u> <u>조기단축 기업(2점)</u>
신기술인증,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등 : 1.5점	
소상공인, 여성고용우수기업, 장애인기업 등 : 1점	

□ (향후 계획) 신인도 가점부여에 대한 의견수렴 후 심사기준 개정(18.7)

담당부서	·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
------	---------------

□ 제도 개요

- 국책은행(산은·기은·수은)의 자금공급시 일자리창출 기여 기업 우대
- 국책은행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은행별로 기준에 따라 일자리 관련 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
 - 최대 1%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
- * (산은) 중소중견기업 $\Delta 0.5\%p$, (수은) 고용자수 증가율 3% 이상 기업 $\Delta 0.7\%p$, (기은)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Delta 0.3\sim 1.0\%p$

< 현행 일자리 관련 자금의 지원 대상 >

기관명	지원 대상
산 은	고용우수기업, 고용창출우수산업, 고용창출인증기업, 세제상 고용확대기업
기 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수 은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2% 이상인 기업

□ 지원 방안

-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시 노동시간 단축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 국책은행의 일자리 관련 자금의 지원 대상을 정부인증 노동시간 단축 우수 기업으로 확대
 - 고용부의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확인 및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인증시스템 구축 선행
 -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 금리·한도 등을 우대 지원

□ 향후 계획

- 노동시간 단축 우수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지원 우대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제도 개요

- (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지원
- (지원규모) '18년 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內 별도 운용)
-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지원조건) ① 한도: 2억 원 이내, ② 금리: 3.0%(고정),
③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절차) 상담·신청 → 현장실사 → 지원결정 → 대출약정 → 실행
- (사업기간) '18.하반기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 방안

-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기업의 인건비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기업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개선)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기업 추가
- 노동시간 단축 조기참여기업을 '정책우선도' 평가 항목의 '성과 공유' 기업 대상으로 추가

* 정책우선도 : 고용창출>일자리안정>성과공유>수출기업>시설투자기업

□ 향후 계획

-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변경 (~'18.下)
- '19년 정부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협의

담당부서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제도 개요

- 교대제도입,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 지원 방안

-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지속 추진

- 설비투자용자의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을 통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 중에서 참여 가능

- 노동시간단축법 개정으로 참여 기업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 심사위원회 심사 시 우선 지원되도록 안내

* 고용센터(사업심사 승인) → 근로복지공단(용자금 배정·관리) → 은행(대부)

□ 향후 계획

- '19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규모 확대 추진

* '18년 33개소 15,873백만원 → '19년 60개소 28,680백만원(증 12,807백만원)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모든기업

*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용자 지원대상 시설 등>

투자 종류	지원금의 용도
설비투자비	·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 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시설 건립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시설 매입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시설 임차비	· 일자리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월세는 제외)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 소유·매입·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지원내용

- (설비투자 용자지원)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 제도 개요

- (목적)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생산공정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 고도화 촉진
- (지원규모) '18년 3,300억원
-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등
- (지원조건) ① 한도: 70억 원 이내, ② 금리: 2.3% 내외, ③ 대출기간: 5~10년
- (지원절차) 상담·신청 → 현장실사 → 지원결정 → 대출약정 → 실행
- (사업기간) '18.하반기 ~ 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 방안

-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기업의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우선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조기 참여기업을 '정책우선도' 평가 항목의 '성과공유' 기업 대상으로 추가

* 정책우선도 : 고용창출>일자리안정>성과공유>수출기업>시설투자기업

□ 향후 계획

- 정책우선도 평가기준 개선 (~'18.下)

담당부서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

□ 제도 개요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재해 예방활동 인정* 시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율 할인(산재예방요율제, '14.1 시행)

- * 사업주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서 제출(1년, 10%)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3년, 20%)
- *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6호)

- 사망사고 발생, 명단공표 등 해당 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지원 방안

- 근로시간 단축이 산재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 * 근로시간 1% 감소시 재해율은 전 산업에서 3.7%, 제조업에서 5.3% 감소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2005)

-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이 조기 단축 시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하여 현행 사업주교육 및 재해예방 계획서 제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료율 10% 할인

□ 향후 계획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추가('18.上,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 근로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할인 근거 마련('18.下, 산재예방요율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사업주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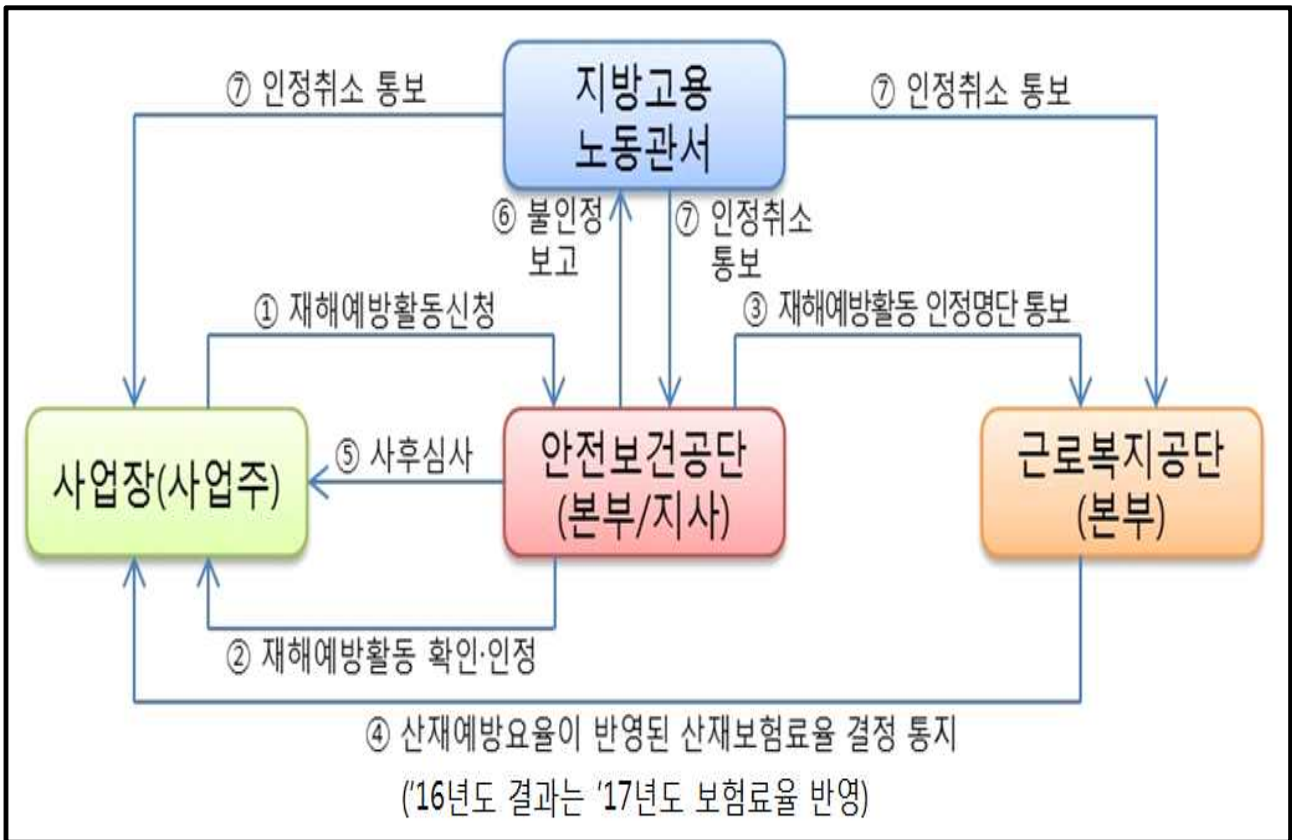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

-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산재보험료 인하율 —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인정: 10%

- 인정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수행기관

- (고용부)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 법·제도 운영·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 인정 취소 등
- (안전보건공단)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 심사 등
-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결정 및 통지
 -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 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을 도입

* 외국인노동자 도입국가 및 총 도입인원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력 배정은 점수제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 순으로 정함

* (점수항목) ▲외국인 고용한도 대비 실제 고용인원(30점)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수(30점), ▲내국인 채용인원(20점) 등

□ 지원 방안

- (방식)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에 대해 점수제 가점을 부여 함으로써 非단축 사업장보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 기존 가점항목(0.2~1점)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3점/5점)의 효과가 상쇄되지 않는 수준(2점) 부여

- (효과) 고용허가 신청 현황(경쟁률 2.3:1)을 고려하면 조기단축 사업장에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 예상

* ('18.1분기 고용허가 신청 현황) 104.7점 만점 중 평균 88점, 커트라인 85.2점 → 가점 2점은 전체 신청 사업장의 74.5%(5,957개소, 83.2~87.2점)의 외국인력 배정에 영향

- 점수제 가점 부여로 사업장간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외국인력 총 도입규모 유지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창출 효과 침해 최소화

□ 향후 계획

- 점수제 가점항목 신설 및 신규인력 배정 시 적용(~'18.7월)

- 향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추이 및 지원 강화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고용한도 및 총 도입규모 확대 방안 검토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제도 개요

- (외국인 고용허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외국인 고용한도) 고용허가를 받은 각 사업장별 외국인노동자 고용한도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설정

<업종별 외국인노동자 고용한도 기준>

업종	주요 기준
제조·서비스업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비례(제조업: 최대 40명, 서비스업: 최대 10명)
건설업	▪ 공사현장별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 금액 비례(업체별 최대 30명)
농축산·어업	▪ 재배·양식면적, 운영 어선 수에 비례(농업: 최대 20명, 어업: 최대 7명)

- 외국인력의 배정은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별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 순으로 외국인력 배정(점수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항목>

기본 점수항목	①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②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③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고득점
가점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완납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④ 5년 연속 무재해 사업장 ⑤ SOC 사업장(건설업) ⑥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 ⑦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어업) ⑧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 ⑨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
감점항목	①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 ② 출국만기보험 연체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 ④ 산재은폐 사업장 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노동시간 단축기업 지원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대해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상 가점을 부여(2점)하여 외국인력 고용허가 시 우대
 -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농·어업 사업장은 가점 미부여
 - ** 노동시간 단축 법정 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만 가점 부여

□ 제도개요

- (추진배경) 기업의 일자리창출·일자리 질 개선 노력을 인정·격려하고 좋은 일자리 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추진동력 강화
- (대상)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고용의 질 개선 실적이 탁월한 기업
- (선정방법) 국민추천, 지방노동관서 현장조사,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고용의 양과 질이 우수한 기업 발굴
- (우대 혜택) 인증패 수여, 금융·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행·재정적 지원

□ 지원 방안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을 현장조사 항목에 포함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의 질을 개선한 기업 선정 시 우대

□ 향후 계획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현장조사 항목에 '노동시간' 반영·시행('18.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

□ **일자리 으뜸기업 인센티브 지원**

-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 수여
- 금융우대, 세무조사 유예, 세액공제 등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

구 분	인센티브
금융	○ 신용평가·금리 우대, 중소기업 융자한도 우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등
세무조사	○ 세무조사 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
세액공제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
정부조달	○ 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평가 가점부여, 근로환경개선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 정규직 채용 우수제품업체 인센티브 지원
정부사업 가점부여	○ 고용창출·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물품적격심사시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
마케팅지원	○ 수상기업·대표자 등 일괄 홍보(신문, 일자리위·관련부처 홈페이지 등)

□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① **1단계 후보기업 발굴(3월)**

- 고용보험 DB: 규모별·산업별로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5배수 추출
- 국민추천 및 고용노동지방관서 현장 발굴: 고용의 질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

② **2단계 후보기업 선정(4월)**

- 근로기준, 산업안전, 남녀고용평등, 공정거래 등 법 위반 사항 및 신용평가 조회
- 2단계 후보기업(현장실사 대상 기업 등) 약 2배수 선정
 - 고용증가, 업종 분포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 DB를 통한 발굴 기업 중 현장실사 대상 선정
 - 국민추천 및 지방관서 현장발굴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기업 발굴

③ **지방노동관서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등 의견조회(4월)**

④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일자리 으뜸기업 최종 선정(5월)**

* 구성: (위원장) 차관, (위원)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전문가 등

□ 제도 개요

-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08년~)



- (인증기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가부 고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 부여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대기업·공공기관 10점, 중소기업 15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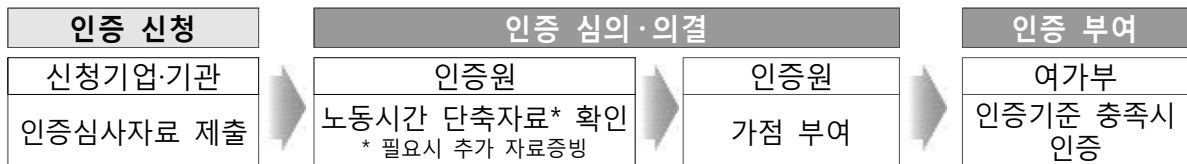
** 대기업·공공기관 70점, 중소기업 60점 이상

- (인증현황) 14개사('08) → 522개사('13) → 2,802개사*('17)

* 중소기업 1,596개사 /대기업 335개사 /공공기관 871개사

□ 지원 방안

-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처간 협업으로 양 제도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노동시간 조기 단축제도' 도입 기업 우대(가족친화기업 인증 시 가점 부여)
- 노동시간 단축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 향후 계획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개정('19.4월)

- '19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적용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

□ 제도 개요

- 교대제 개선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여 노동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컨설팅 희망(노사합의 요건) 사업장 대상 장시간근로 등 10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18년 1,050건 목표)

* 노사발전재단, 시애틀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능률협회컨설팅, 공인노무사회

** ①장시간근로 개선, ②임금체계 개선, ③평가체계 개선, ④비정규직고용구조 개선, ⑤평생학습체계 구축, ⑥작업조직·환경 개선, ⑦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⑧고용문화 개선 ⑨일가정양립, ⑩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 지원 방안

- 지청·지노위와 수행기관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장시간근로 취약사업장 적극 발굴 및 컨설팅 집중 지원

* 장시간 근로개선 분야 컨설팅 → 본예산 목표 200건, 추경 450건 추가 편성

- 업종·분야별 우수사례 모델화(매뉴얼) → 기업 자체 개선능력 강화
 - 「특례제외업종 장시간근로개선 매뉴얼」 제작·배포 추진

* ① 노선버스업종('18.7.1 68시간 단축 적용) 매뉴얼 제작 진행 중<노사발전재단, 5월>

② 5개 수행기관별 매뉴얼 개발 추진<~12월>

□ 향후 계획

- 컨설팅 지원 계속(4월~), 매뉴얼 제작·배포(~12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

참고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장시간근로·고용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지원 내용

- 컨설팅 희망(노사합의 요건) 사업장 대상 장시간근로 등 10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구분	사업 내용	
주관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컨설팅 영역	①임금체계 개선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정년연장 실현 등
	②평가체계 구축	평가·보상체계, 직급·승진체계, 각종 규정 정비 등 노사 상생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등
	③장시간근로 개선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를 통한 실근로시간단축 등
	④평생학습체계 구축	중장기 평생학습 Master Plan 수립, 평생학습체계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경력개발 및 퇴직 프로그램 등
	⑤노사파트너십 구축	경영전략에 따른 노사전략 수립, 노사상생의 파트너십 기반 구축,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등 사업장의 변화관리 체계 구축 등
	⑥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직무순환제 및 유연배치전환 등 유연한 작업방식 및 현장 책임 경영으로의 작업조직 개편 등
	⑦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법적 인사관리체계 수립
	⑧고용문화 개선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위한 적합직무(직종)개발, 직무재설계 및 관련규정 정비(취업규칙 등), 조직(근로)문화 개선 등
	⑨장년고용안정	장년친화 인사제도 정비(승진, 직무, 직무체계 등), 장년근로시간 단축, 장년적합직무 발굴, 숙련전수 시스템 도입(멘토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⑩일가정양립	500인 미만 기업의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수준을 진단(일·가정 양립 진단지표 활용)하고 적합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고용(조직)문화를 만드는 과정을 지원(여성인력 활용 방안 및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를 지원)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지원범위	컨설팅 무료 지원 * 다만,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 경우 총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컨설팅 수행기간	사업장 기준 8주~10주 * 패키지 시 15~21주	

①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우선 지원

□ (개요) 현장 숙련기술인이 보유한 기술·노하우가 기업내에서 체계적으로 전수될 수 있게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내용)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내부 인력에 전수할 수 있도록 현장진단 및 기술체계화(매뉴얼화) 지원

* (독일) 인더스트리 4.0 제조혁신의 주요과제로 ‘앱시스트(숙련 근로자의 노하우를 VR, AR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DB화)’ 추진

○ (지원대상)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총 728백만원, 80개 사('18년)

□ (개선) 현행 사업을 활용하여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 우선 지원('18~)

○ ‘일자리함께하기’(고용부) 사업 선정기업 등 노동시간 단축기업에게 현장평가 가점(최대 15점) 부여

□ (향후 계획) 지원대상 기업 선정 및 사업 착수('18.7~)

담당부서

· 중소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②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 (개요)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 (지원내용) ①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최대1년, 5천만원)

- ②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최대1년, 1억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 공정개선 과제는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개선)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우대 가점 지원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356.3억원, 1,010개 기업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87.5억원, 105개 기업

□ (향후 계획)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 가점 추가('19. 상반기 ~)

담당부서	· 중소기업부 기술보호과
------	---------------

①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

□ 사업 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이와 연동되는 제어기, 센서 등의 설치와 기존 구축 시스템 고도화 지원 ('18년 782억원)
 - 신규 구축지원 : 기업당 5천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50% 이내
 - 스마트공장 고도화 : 기업당 1억원 한도, 총사업비의 30~50%(총사업비 1억원 이내 50%, 초과분 30%)

<스마트공장 지원계획>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지원 (개소)	5,003	2,000	2,500	2,500	3,000	5,000	20,003

□ 지원 방안

- 노동시간 단축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신규 도입 시에도 스마트공장 고도화(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까지 지원 허용 및 가점 부여(19년 上~)

□ 향후 계획

-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공고 시 근로시간 단축기업 허용 및 가점 반영 ('19. 상반기 ~)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② 스마트 공장 핵심기술 R&D

□ 사업 개요

- (목적) 제조업과 ICT융합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개발 지원

* 국정과제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 (사업기간) '18~'20년 ('18년 예산 40억원)
- (지원조건) 출연(민간 매칭)
- (시행주체) <전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행> 공공연구기관, 대학, 중소·중견기업

□ 주요 지원 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고도화 핵심기술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기반·핵심기술개발
패키지 플랫폼	통합SW 등 제공을 위한 스마트공장 패키지 플랫폼 개발
모델공장	한국형 고도화 표준 모델공장(대표·데모공장) 개발
품질평가 체계	핵심부품 상용화 지원을 위한 성능 및 품질평가 체계 개발('18년 1개 과제)

□ 향후 추진방향

- 현장 수요와 구현 가능성에 따라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R&D 지원

	단기(요소기술 국산화/고도화)	중기(사람중심·협업 공장)	장기(초연결 제조 밸류체인)
공급 기업	·솔루션 연결경쟁력 확보 ·모듈 수준 인증체계 개발	·AR/VR, 웨어러블 로봇 등 사람-기계 제조협업 기술	·AI 기반 스마트공장 ·가치창출 제조 플랫폼
수요 기업	·업종별 대표공장 실증	·사람 중심 디지털 제조 환경 실증	·밸류체인 연결
기대 모습	·공장내 SW-HW의 디지털화 및 통합 → 제조 생산성 향상	·작업현장의 디지털화 → 작업자의 능률 향상 및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	·공장·업종·지역간 협업형 제조 밸류체인 구축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

③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 사업 개요

- (목적) 주요업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테스트베드 및 상호운용성 시험·성능평가 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16~'20년 ('18년 예산 18.66억원)
- (지원조건) 출연(민간 매칭 30% 이상)
- (구축지역) 경기 안산
- (시행주체) <주관> 스마트공장 추진단 <참여> 전자부품연구원, 경기TP

□ 주요 사업 내용

- (기반구축)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의 실제공장 적용前 비교 시험 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

* 고도화기술: 디지털트윈, CPS,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협업로봇, 3D프린터, AR/VR

** 가상생산 및 시생산 지원 관련 업종별 특화 장비, 표준상호운용성 시험 환경 구축 장비, 제조ICT플랫폼 구축 장비 등 총 32종 장비 제작·구축

- (구축방안) 국내외 공급기업 역량을 집중, 전품연, 추진단과 주요 기업 간 장비 협업 제작을 통해 구축

- 현재('17년) 25개사 구축에 참여 중, '20년까지 40개사로 참여 확대

* 국내 : 삼성SDS, LS산전, 한화테크윈, 현대로봇틱스, 미라콤, 현대위아 등

* 국외 : 지멘스(독), 로크웰오토메이션(미), 슈나이더일렉트릭(프), GE(미) 등

- (연계협력) 글로벌 데모공장(獨, 美)과 연계된 공장-공장연계 장비 구축 및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

□ 향후 추진방향

- (테스트베드 확대) 스마트공장 핵심기술(CPS·빅데이터·IoT 등) 테스트, 상호호환성 검증 등을 위한 데모공장 확대 추진(지역별·업종별 등)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

④ 전문기술 인력 양성

□ 사업 개요

- (목적) 주력산업 및 신산업을 중심으로 석·박사 대학원 교과과정 개발·운영, 현장실습 수행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 (지원기간) 5년 이내
- (수행기관) 대학,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 성격의 비영리 기관
- (지원내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원 등

□ 사업 내용

-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고급인력양성
*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20개 업종 포함
- (소프트파워전문인력양성)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공통기반분야* 인력양성
* 디자인, 기술경영, 엔지니어링 등 5개 분야 포함
- (인적자원생태계조성) 인력수급통계, 산업별인적재원개발협의체 등

□ 최근 3년간 예산 및 수혜인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예 산	46,209	48,361	63,620	80,110
수혜인원(학위과정)	1,678	2,184	2,335	2,200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인력양성 ('18년 25억원)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의 일부

- (개요)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석·박사, 대학 당 20~30명/년 내외 양성
- (추진방향) 스마트공장 핵심 기반기술 개발 및 운영설계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교육과정 확대 ('17년 3개 대학 → '18년 4개 대학)
* 경희대·산업기술대·충북대에 '18년 동아대 추가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

□ 제도 개요

- (기초노동질서)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법령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적인 법 위반(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여부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18년 6,000개소 목표
- (업종별 자율준수) 노·사 단체 및 전문가 단체에서 업종별 노동관계법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지원
 - * '18년 병원업종 50개소, 소규모 도·소매, 음식점업 등 600개소 목표
- (노동법 교육) 신설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실시 * '18년 사업주 교육 4,000명 목표

□ 지원 방안

- (업종별 자율준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 노동시간 위반 사례가 많은 업종에 대해 노동시간 자율준수 집중지원('18.7월~)
 - * 지원대상 사업장(안): 노선버스, 음식점, 숙박업(각 500개소) 등 3개 업종
- (노동법 교육 및 홍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법 교육 및 홍보 실시('18.7월~)
 - 신설 사업장 등 노동법 준수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관련 사업주 교육 실시(5,000명)
 - 5~300인 미만 사업장(약 7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리플렛 등 홍보물 전송(팩스 및 우편)

□ 향후 계획

- 사업계획 공고(5월) → 위탁 사업자 선정·계약(6월 초) → 사업 실시(7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사업목적

-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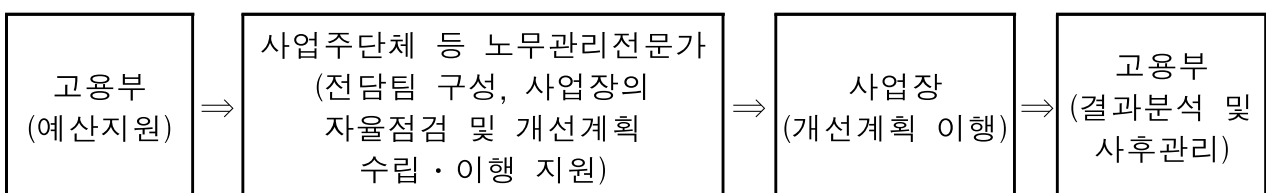
□ 사업내용

-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 사업기간: 2018.1~10월
- 예산규모 및 사업목표량: 1,808백만원, 전국 6,000개소

□ 지원대상 사업장

-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미작성 사업장 우선 지원
- 신청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 신설사업장(근로자수 제한 없음) 등
 - *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법 위반이 계속되는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 등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 사업추진체계



□ 제도 개요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노동시간 단축 등 자발적으로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 (추진경과) 「'18년 경제정책방향」에 대책으로 포함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8.4~10월)

□ 지원 방안

- ① 참여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용'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②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③ 차등적으로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제 단계별 세부구성안 >

단 계	세부내용
근무혁신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 도입·활용, 연차휴가 활성화, 교대제 개편 등 ▪ 근무혁신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계획 이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에 따라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 실행 정도, 성과 등을 평가하여 S, A, B 등 그룹으로 구분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지원, 근로감독 면제, 컨설팅 우선지원 등 <u>그룹별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설계</u>하여 기업이 상위 그룹을 획득할 유인 확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근무혁신 마크를 부여</u>하여 구인·구직 취업 포털, 제품·서비스에 활용, S등급의 기업은 근무혁신 30대 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례 확산

□ 향후 계획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모델 개발('18.下)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시범실시('19)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확산('2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제도 개요

-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16~)

시차 출퇴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 근무제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유연근무 활용 노동자 1인당 주 3회 활용 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주당 5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중소→중소·중견, '17.9월), 선택근무제 지원요건 완화('18.2월) 등 제도 개선
- 유연근무제 활용기업이 노무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배포('18.3월)
⇒ 제도개선, 인식개선 홍보 등 노력으로 유연근무 지원실적 대폭 증가
* 지원인원: ('16)657명 → ('17)3,880명 → ('18.4월)3,796명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향후 계획

-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하여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개선 캠페인, 인사담당자 대상 설명회, 사업주단체와 연계한 사업 안내 등 추진
- 유연근무제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집 발간('18.下)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 사업목적

-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 또는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시스템 ▪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인사·노무 관리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직접 지원
설비·장비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용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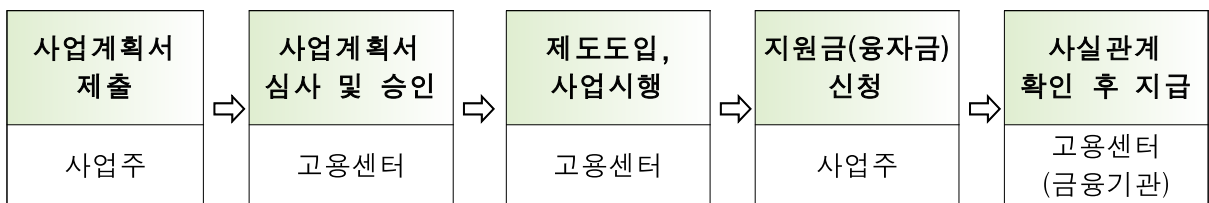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사업주가 투자한 총 투자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용자 지원

* 용자 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 중견기업 연 2%)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금 산정 예시>

구분	기업A		기업B		기업C	
	기업 투자	지원	기업 투자	지원	기업 투자	지원
계 (투자 총액)	8천만원		8천만원		8천만원	
시스템구축	6천만원	2천만원 (직접지원)	4천만원	2천만원 (직접지원)	2천만원	1천만원 (직접지원)
설비·장비구축	2천만원	2천만원 (용자지원)	4천만원	4천만원 (용자지원)	6천만원	4천만원 (용자지원)

□ 사업추진체계



□ 제도 개요

-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노동자, 대규모기업 45세 이상 노동자 등
- (지원) 1년 200만원(5년간 최대 300만원) 훈련비용* 지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등은 NCS 기준금액 100%, 대규모기업 45세 이상 80% 지원
- (절차) 대상자가 고용센터로부터 노동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희망 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원

□ 지원 방안

-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되는 개인시간을 능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대기업 노동자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선정하여 우선 적용
 - *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노동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노동자를 선정하여 지원
 - * 4대 사회보험료 월보수총액(국세청신고기준)으로 비교분석 중

□ 향후 계획

- 데이터 분석 및 논의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5월) → '19년 예산편성시 반영(5월~) → 대기업 지원대상 확대실시('19년) → 지원성과 모니터링('19.下)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

참고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

□ 사업 목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이·전직 및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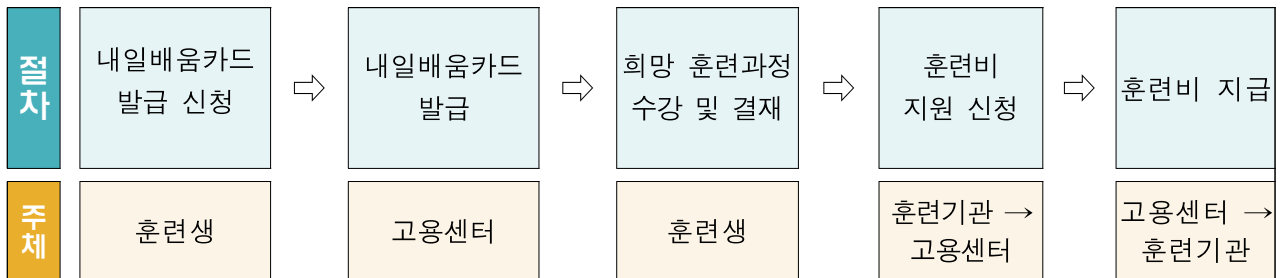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비정규직(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대규모기업 노동자(45세 이상 노동자·무급휴직자·육아휴직자·이직예정자 등)
- **(지원조건)** 훈련비 지원기준금액의 100%(대규모기업의 45세 이상, 육아휴직자는 80%) * 음식·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200만원(5년간 300만원)

* 고용위기지역 노동자의 경우 1인당 300만원(5년간 400만원) 지원

□ 지원 수준

훈련과정	지원 수준	
	일반	우대
일반과정	지원금 기준금액 80%	지원금 기준금액 100%
음식·기타서비스	수강료의 60%	
외국어과정	수강료의 50% (최초 40시간을 108,000원으로 하고 추가 20시간마다 54,000원 한도)	
인터넷과정	수강료의 100%	

□ 사업 절차



□ 제도 개요

- 노·사 단체, 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협력하여 광역행정 단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총 16개소)를 구성
- 훈련 수요·공급조사를 실시하고 공동훈련센터*(18년 71개소)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실시(사업주단체, 지역대학, 폴리텍 대학 등)

* '18. 채용예정자 200개 과정(5천명), 재직자 향상 1,114개 과정(45천명) 실시 예정

□ 지원 방안

- '19년 훈련과정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 우선 선정
- 훈련과정 선정심사 지침에 해당 우선순위를 추가

<기존 우선순위 고려사항('18년)>

- ▶ 취업률(양성), 수료율(향상) 등 훈련실적을 반영한 센터별 훈련과정 선정
- ▶ 경영회계사무 등 민간훈련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한 과정 참여 배제
- ▶ 신산업·기술 과정, 취약계층(중장년, 경단녀 등) 특화과정 선정
- ▶ 지역의 훈련수요를 반영한 과소공급 과정 선정
- ▶ 지역현안 및 주력산업 등 필요하다고 지역 인자위에서 심의·의결한 과정 선정

<우선순위 항목 추가 예시('19년)>

- ▶ (추가) 운수, IT, 금융보험, 방송통신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

□ 향후 계획

- '19년도 훈련 심사 시('18.12월 예정) 위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이 우선 선정되도록 운영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사업 목적

- 중소기업 대상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우수 인력 공급을 위하여 지역 내 인력 및 훈련 수요*에 기반 한 재직근로자 향상 훈련 및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실시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총 16개소)에서 훈련 수요 및 공급조사 실시

□ 사업 내용

- **훈련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 **지원대상:** 인력·훈련 수요가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공동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공동훈련센터*)

* 사업주단체, 지역대학, 폴리텍 대학 등 '18년 총 71개 기관 운영 중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연간 20억)	지원조건
훈련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증·개축 비용, 장비 구매·리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비용 등	연간 2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연간 3억원	대응투자 20%
	일반 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사업추진을 위한 직접비용 등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 수강생만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공고(인력공단) → 사업계획서 제출(공동훈련센터) → 사업계획 심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력공단) → 보조금 교부(인력공단)

□ 제도 개요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서 중소기업연수원을 운영 중

* 연간 연수인원 : ('15) 56,739명 → ('16) 48,282명 → ('17) 47,388명

- 특히,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한 체험형 연수* 추진

* 실시간 설비제어·생산정보, 빅데이터 등 스마트공장 기술 습득이 가능한 학습용 스마트공장(Learning Factory)을 안산 연수원에 1기 구축('17.11)

□ 지원 방안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학습형 스마트 공장을 확대('18년 1개 → '22년 2개)하고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22년까지 스마트제조분야 전문인력 5만명 양성

* ('18) 7천명 → ('19) 8천명 → ('20) 9천명 → ('21) 1만명 → ('22) 1만명

- 도입기업의 현장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시 운영 교육 의무화하여 기업 당 2~3명 내외의 운영인력 확보 지원('19년)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요소기술 등 ICT 융합기술 교육과정 신설·확대('18년 66개 → '22년 100개)

□ 향후 계획

- 스마트공장 전문인력과 스마트제조 중소기업 간 인력매칭 및 유휴인력 재교육·재배치를 위한 인적자원관리센터(HRD센터) 설치('19년)

담당부서

· 중소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① 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

□ 제도 개요

- 양질의 일자리(구인 기업) 발굴을 통해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의 품질 및 일자리 매칭의 만족도 제고 추진
- 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과(팀) 내에 일자리 발굴팀 구성·운영
 - * 통상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출장센터 등은 인력사정을 고려해 1명으로 구성
- 구인수요가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우수 제조기업 등을 '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후 일자리 매칭 우선지원

□ 지원 방안

- 구인수요가 시급한 노동시간 단축기업을 '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후 우선지원 실시
 - * '17.12월말 기준 15,570개 기업 → '18년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중심 선정
- 지방관서별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내에 일자리 발굴담당 팀장 등이 참여하여 신속한 구인수요 파악

□ 향후 계획

- **일자리 발굴팀 운영 가이드라인*** 지방관서 既 배포(5.10)
 - * 중점지원대상기업 선정시 노동시장 단축 종합점검추진단과 연계하여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발굴·선정
- 구인수요가 즉각 발생하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구인수요 파악 후 **일자리 발굴 적극 추진**(5월말~)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

②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 제도 개요

- 물리적 제약 등으로 고용서비스 수혜가 어려운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고용복지+센터 이용에 물리적 제약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순회출장센터(12개) 운영
 - * (역할) 구인·구직등록, 실업급여 인정업무, 기업지원제도 안내, 종합컨설팅 서비스 제공, 채용대행 서비스 등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 * (지역) 인천, 수원, 강릉, 원주, 김해, 진주, 대구, 대구강북, 광주, 전주, 천안, 청주
- 교통상황이 어려운 산업단지, 소규모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서비스 제공 중

□ 지원 방안

- 장시간 노동업종 사업장 밀집지역에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확대 후 노동시간 단축지원과 고용서비스 복합 제공
 - * '17년 12개소 → '18년 20개소 (장시간 노동업종 밀집지역 우선)
- 순회출장센터별로 이동수단을 임차하여 현장 중심으로 신속한 일자리 매칭 실시('18.下 13대 → '19. 25대)
 - * 동행면접, 구인발굴을 위한 현장방문(주2회) 등에 활용

□ 향후 계획

-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확대계획 수립(지역선정 포함, '18.6월)
 - *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설치지역에 대한 운영지침 배포 예정(6월말)
-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확대 운영('18.7월~)
-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차량 임차 추진(1차 '18.7월 12대, 2차 '19.1월 25대)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현황) 유럽과 일본 등 외국사례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의 경직성이 높아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OECD국가 중 노동시간이 2번째로 긴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필요

* '16년 노동시간: 한국(2,052), 멕시코(2,348), 일본(1,724), 프랑스(1,383), 독일(1,298), OECD평균(1,707)

-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2022년 말까지 노사 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 장시간 근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부 유연노동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신중한 접근 필요

- (향후계획)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산업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실태조사 시작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은 노동부장관에게 22년말까지 탄력적노동시간제 개선 방안 강구 의무를 부과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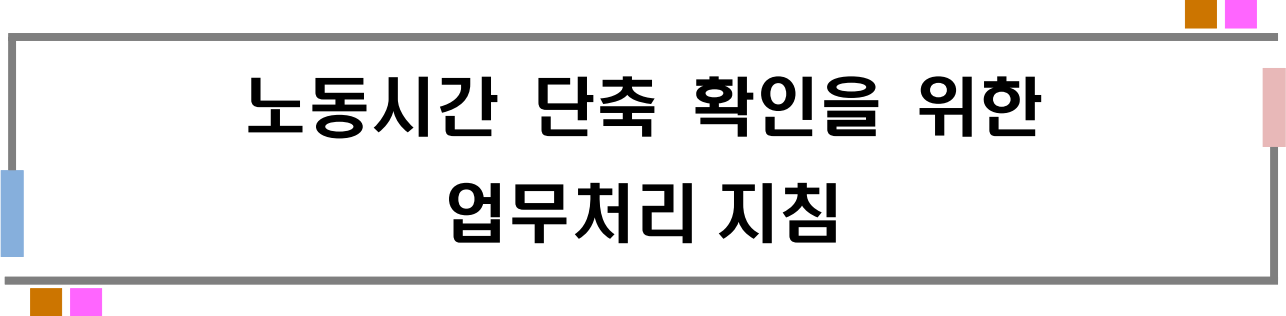
-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단위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
 - * 연장근로(12시간)는 별도로 가능
- 운영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2주 이내'와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음
 - * (예) 1주: 48시간 - 2주: 32시간 → 1주차 40시간을 넘는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 미발생
 - * (활용) 계절적 업종(빙과류제조업 등),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接客업 등)

□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노동시간만 정하고 각일, 각주의 노동시간과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 자유에 맡기는 제도
 - * 자율출퇴근제(출·퇴근시간만 변경), 시차출퇴근제(대고객 업무 등 필요에 따라 회사가 결정) 등과 유사하나, 일일 노동시간 조정 등 더 유연하게 활용 가능
 - * (장점) 업무 효율성 향상, 육아, 학업 병행 등 일-생활 균형 지원

□ **재량 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 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시행령에 위임)에 한해서 노사가 서면으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
 - * (예)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자연과학 연구/정보시스템 설계·분석/기사의 취재, 편성, 편집/의복·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방송·영화 등 PD, 감독 등
 - * (장점) 근로자 업무재량 인정, 실 노동시간 관련 논란 해소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2018. 6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순서

I . 개요	105
II . 업무 처리절차	105
① 신청(사업주)	105
② 검토(지방관서)	107
③ 결과통지(지방관서)	108
④ 부처 간 공유(본부)	108
⑤ 사후관리(본부·지방관서)	109
III . 기타	109
[참고] 업무 프로세스(일반)	111
[붙임 1]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서	112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확인신청 검토 보고서	114
[붙임 3]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18
[붙임 4]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접수 및 확인서 발급 대장	120

I. 개요

1 추진배경

-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18.3.20. 공포)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조기도입을 유도할 필요
- 이에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업장의 조기단축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각 부처와 공유할 필요

❖ 다만,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18.5.17.)」에 따른 각종 조기단축 사업장 지원 제도별 목적·특성 등에 따라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등이 있을 수 있음

2 적용대상

- '18.3.1.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기업규모별 법정시행일 이전에 주 최대 노동시간(연장·휴일근로 포함)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한 사업장

시행일	적용 대상
'18. 7. 1.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19. 7. 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20. 1. 1.	▶ 50~300인 미만 사업장
'21. 7. 1.	▶ 5~50인 미만 사업장

II. 업무 처리절차

1 신청(사업주)

- (주체)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사업주
-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
 - ① 법정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할 것
 - ② 노동시간 조기단축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 ③ 노동시간 단축을 반영한 노·사간 협약을 제·개정할 것
 - ④ 노동시간 조기단축 후 실제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 이하일 것

요건	내용
① 조기단축 시행	▶ 업종·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정시행일 이전에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할 것
② 노동자 과반수 동의	▶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 ,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③ 노·사간 협약	▶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 가 반영된 노·사간 협약서*를 제·개정할 것 * 단체협약, 취업규칙, 협정, 확인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합의)를 얻어 서면으로 작성한 모든 협약을 말하며, 근로계약서 갱신 등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만으로는 부족
④ 실 노동시간 주 52시간 이하	▶ 전체노동자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할 것 (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과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을 비교) * (예) 조기단축 시행일이 '18.7.5, 확인 신청일이 '18.11.1.인 경우 '18년 6월과 10월을 비교하여 전체노동자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할 것 ▶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간 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개별근로자가 없을 것 * (예) 확인 신청일이 '18.11.1.인 경우 '18.10월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개별근로자가 없을 것

- (방법)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서」(붙임 1) 제출

* (예) 조기단축 시행일이 '18.7.5.인 경우 '18.9.1.부터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 ①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②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 ③ 노동시간 조기단축에 대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④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사간 협약서
- ⑤ 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과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의 실제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자명부, 근태기록자료 (출·퇴근부 등), 임금대장 등)

2

검토(지방관서)

- (주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부서)
 - 근로감독관과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변호사·노무사가 함께 담당하되, 변호사·노무사가 우선 처리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관이 협력
 -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변호사·노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 (방법) 신청자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서류검토와 함께 신청 사업장 소속 2명 이상의 노동자에게 반드시 실제 노동시간 단축 여부를 유선 확인
 - * 허위신청이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실시

요건	검토 내용
① 조기단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과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법정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 - (업종)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21개) 해당 여부 - (상시근로자 수) 조기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1일 평균 근로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상시근로자 312명 시내버스업체의 법정시행일은 '19.7.1.
② 노동자 과반수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③ 노·사간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간 협약서(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지
④ 실노동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과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을 비교하여 전체노동자의 주 평균 실제 노동시간이 감소하였는지 ▶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간 주 평균 실제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개별근로자가 없는지

- (절차) 변호사·노무사 또는 감독관 검토 → 부서장 전결 ([붙임 2] 참조)

3 결과 통지(지방관서)

- 지방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 가능

▶ 조기단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 (붙임 3)
▶ 조기단축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서 미발급
▶ 허위신고 또는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반려

* 확인서 미발급 또는 반려의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

-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확인서(붙임 3) 발급 후, 확인서 발급 사업장 명단***(확인증 사본 첨부)을 보고 양식(붙임4)에 따라 본부에 매일 보고

* 향후 내부 전산망(노사누리)에 등록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보완 추진

4 부처 간 공유(본부)

- 본부는 지방관서에서 보고한 '확인서 발급 사업장' 정보를 취합하여 **온나라시스템에 등재(매일)** → 타 부처와 공유

- 향후 지방관서에서 신청 처리결과를 입력하면 타 부처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 개발 추진 (약 4개월 소요)

* 각 부처의 지원제도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조기단축 확인서 발급 내용을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 >

❖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여권발급 공동이용서비스) 민원인이 시·도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시·도 업무담당자는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병적증명서(병무청)를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

5

사후 관리(본부·지방관서)

- 조기단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실시
 - 지원사업 소관 부처에서 통보한 조기단축 의심 사업장도 포함
 - * 실제 노동시간 단축 여부, 휴게시간 과다 계상 및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 중점 확인
- 실태조사를 통해 조기단축 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확인서 취소 및 확인서를 반납토록 조치
 - 확인서 취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
- 실태조사,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실은 각 부처와 공유하여 각종 지원제도의 부정수급(부당이득) 방지
 - * 확인서 발급 사업장 정보에서 제외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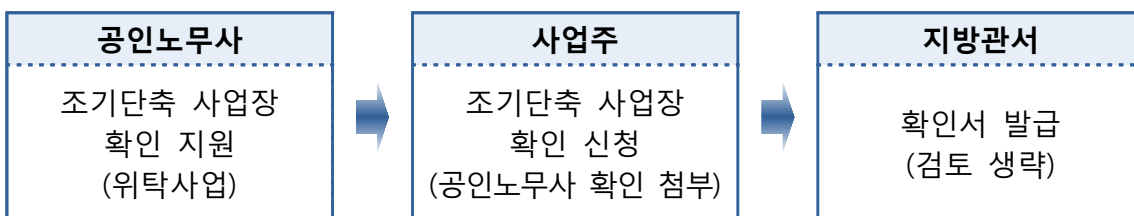
Ⅲ. 기타

- 본부는 지방관서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추진

< 지방관서 업무부담 최소화 방안 >

- ❖ ('18년) 권리구제팀 소속 변호사·노무사를 우선 활용
- ❖ ('19년~)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확인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 수행하는 방안 등 검토

* (참고) 「근로감독관 직무규정」(훈령) 제75조(취업규칙의 심사와 변경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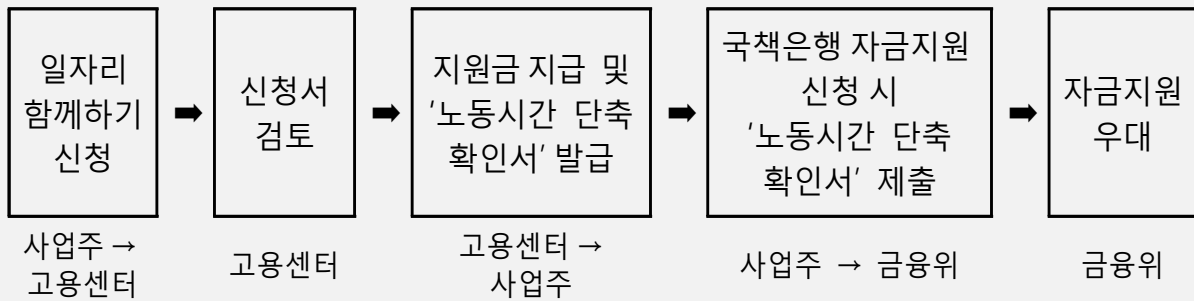
【 확인서 발급 특례 】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조기단축 확인 요건이 지침상 요건보다 엄격한 점을 감안하여,

- ‘일자리 함께하기’ 조기단축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감독 부서의 조기단축 확인 없이 동일한 우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조기단축 기업 확인서 발급(지침상 확인서 양식과 동일)

※ (예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조기단축 우대지원을 받는 기업이 국책은행 자금지원 우대혜택(금융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근로감독부서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 고용센터는 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장 명단을 근로감독부서와 즉시 공유하고, 근로감독부서는 ‘확인서 발급 사업장 명단’을 총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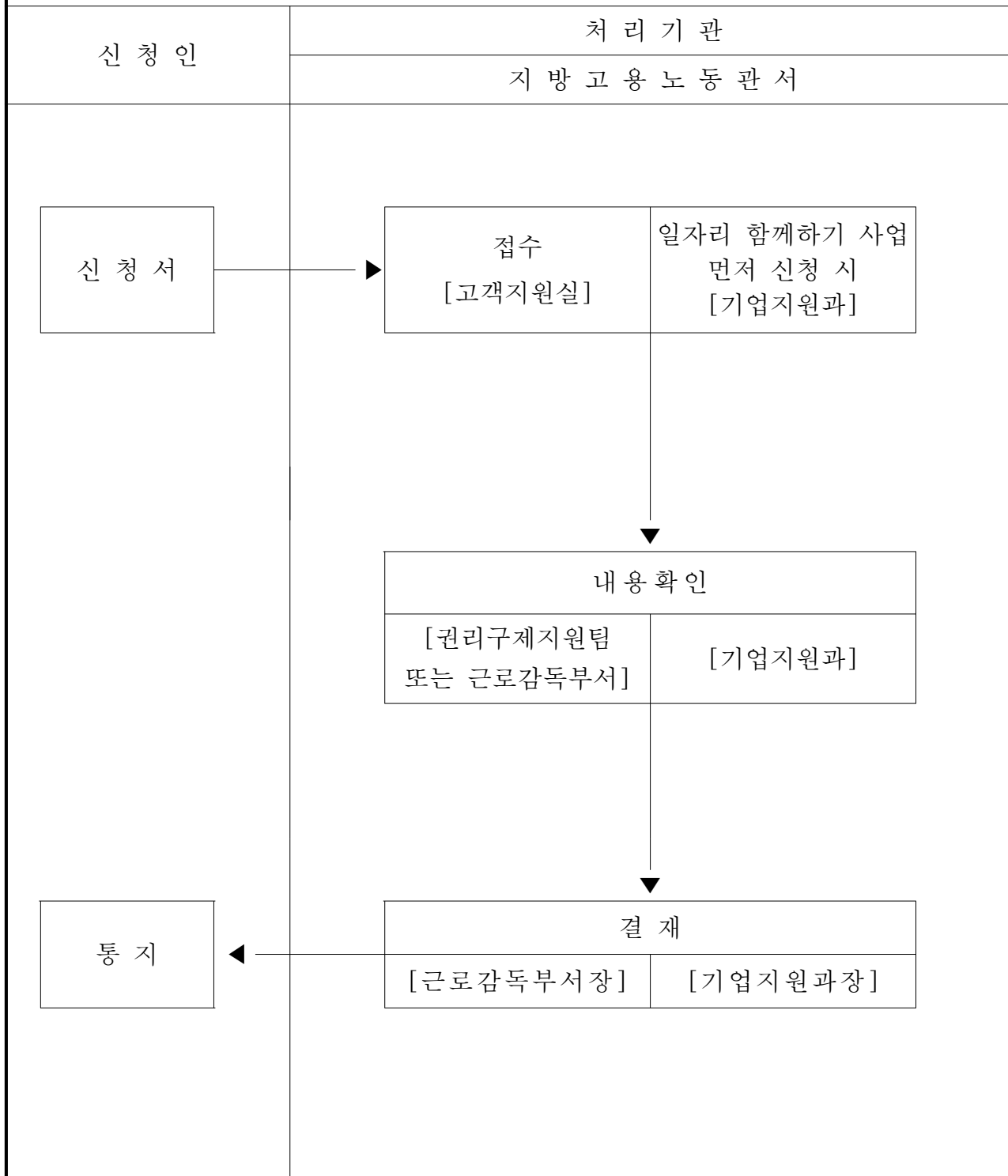
[참고] 업무 프로세스 (일반)

단계	주체	내용
① 노동시간 조기단축 노동자 과반수 동의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간 조기단축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 ▶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② 노·사간 협약 체결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노·사간 협약(단체 협약·취업규칙 등) 제·개정
③ 노동시간 단축 시행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2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
④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행 확인 신청
⑤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 검토	지방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해당 사업장의 법정시행일, ② 조기단축 시행일, ③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여부, ④ 노동시간 단축을 입증할 수 있는 노·사간 협약서, ⑤ 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과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의 실제 노동시간 등 확인
⑥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 처리결과 통지	지방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1회 연장 가능)에 처리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 '확인서 발급 사업장 명단' 본부 보고(매일)
⑦ 사후관리	지방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노동시간 단축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업장 중 일부 - 지원사업 소관 부처에서 통보한 조기단축 의심 사업장 ▶ 확인된 위반사실을 각 부처와 공유하여 각종 지원제도의 부정수급(부당이득) 방지

※ 기재요령

- ⑤ 근로자 수는 일용·임시·상용근로자 중 어디에 속하든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서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바로 전 달의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 검토 보고서

구분	기안	결재(전결)
직위		
성명		

사업장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근로자 수		전화번호	
소재지			

확인사항	검토의견	확인결과
법정시행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특례제외 업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상시근로자 수	<input type="checkbox"/> 300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50~300인 미만 <input type="checkbox"/> 5~50인 미만	
조기단축 시행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노동자 과반수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확인사항	검토의견	확인결과
노·사간 협약서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	<input type="checkbox"/> 52시간 이하 <input type="checkbox"/> 52시간 초과	
실제 노동시간 단축		
조기단축 시행 후 전 체 노동자의 평균 실 노동시간	<input type="checkbox"/> 주 52시간 초과 <input type="checkbox"/> 주 52시간 이하	
조기단축 시행 후 주 평균 52시간 초과 노동자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최종 의견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에서 제출한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확인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

보고자 직위:
 성명:

[예시]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 검토 보고서

구분	기안	결재(전결)
직위	노동변호사 (공인노무사)	과장
성명	김○○	박○○

사업장명	(주)가나운수	업종	노선버스운송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명	홍길동
근로자 수	312명	전화번호	044-765-4321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789		

확인사항	검토의견	확인결과
법정시행일	2019. 7. 1.	신청 사업장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법정시행일 확인. * (예시) 위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근기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며 법정시행일은 2019. 7.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해당	근기법 부칙 제1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해당 여부
특례제외 업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근기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해당 여부
상시근로자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300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50~300인 미만 <input type="checkbox"/> 5~50인 미만	조기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임시·일용·상용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포함
조기단축 시행일	2018. 9. 1.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사간 협약서의 조기단축 시행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18.7.1.부터 1년간 단위기간을 매분기 초일부터 매분기 말일로 하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중
노동자 과반수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확인사항	검토의견	확인결과
노·사간 협약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가 반영된 노·사간 협약서에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 확인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52시간 이하 <input type="checkbox"/> 52시간 초과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실제 노동시간 단축		
조기단축 시행 후 전체 노동자의 평균 실노동시간	<input type="checkbox"/> 주 52시간 초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 52시간 이하	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과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을 비교하여 전체 노동자의 주 평균 실노동시간 감소 여부
조기단축 시행 후 주 평균 52시간 초과 노동자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간 주 평균 실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개별근로자 유무
최종 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위 사업장은 노동시간 조기단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서 근기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인 2019. 7. 1.보다 이전인 2018. 9. 1.부터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을 조기 시행하고 있음

주식회사 가나운수에서 제출한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확인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

보고자 직위: 노동변호사(공인노무사)

성명: 김○○

제 - - 호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장명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근로자수	명	전화번호	
소재지			
법정 시행일		조기단축 시행일	
<p>귀 사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인 ○○○○년 ○○월 ○○일보다 앞선 ○○○○년 ○○월 ○○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p>			
※ 동 확인서 발급 이후, 허위 신청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주 최대 52시간 미시행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서 발급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번호 부여 체계

제 ①○○○○○ - ②○○○ - ③○○○○○호

- ① 발급연도 기재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 분류코드 기재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별 확인서 발급 순서에 따른 부여번호 기재

< 지방노동관서 분류코드 >

지방노동관서	코드 번호	지방노동관서	코드 번호
서울청	01	부산북부지청	25
서울강남지청	02	창원지청	26
서울동부지청	03	울산지청	27
서울서부지청	04	양산지청	28
서울남부지청	05	진주지청	29
서울북부지청	06	통영지청	30
서울관악지청	07	대구청	31
중부청	08	대구서부지청	32
인천북부지청	09	포항지청	33
부천시청	10	구미지청	34
의정부지청	11	영주지청	35
고양지청	12	안동지청	36
경기지청	13	광주청	37
성남지청	14	전주지청	38
안양지청	15	익산지청	39
안산지청	16	군산지청	40
평택지청	17	목포지청	41
강원지청	18	여수지청	42
강릉지청	19	대전청	43
원주지청	20	청주지청	44
태백지청	21	천안지청	45
영월출장소	22	충주지청	46
부산청	23	보령지청	47
부산동부지청	24		

